

# 사전자산배분기준

제정 2009.02.04.

개정 2009.11.20.

개정 2015.1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자산)** ①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 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절차 없이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사전 거래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기준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9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준용 여부는 투자일 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펀드”라 함은 법 제9조 제18항 1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 ③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 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펀드의 재산별로 주문가 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를 말한다.
3. “운용담당자”라 함은 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실행 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 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7.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 문방식을 말한다.
8.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 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5조(자산배분 원칙)**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하나 또는 다수의 펀드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분한 자산은 주문접수시간 순서대 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펀드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펀드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 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실제 취득, 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미리 정한 펀드

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담당자가 펀드별 배분 우선순위 또는 비율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 또는 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 할 수 있다.

- ⑤ 운용담당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매매담당부서장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매매담당부서장은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매매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 ⑤ 운용담당자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⑥ 운용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주문시간, 주문번호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 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주문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 ③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만을 기재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펀드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헤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9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0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용담당자의 업무)**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3.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제12조(매매담당자의 업무)**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산배분명세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에 따라 2015년 10월 13일 본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제4차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201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